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081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경익, 채승준

변론 종결2024. 10. 10.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1, 2차 지급명령 및 전부명령

(1) 피고는 2006. 12. 12. C를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차3173)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13. "C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0. 2.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07.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07. 1. 24. 1차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C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중 141,897,2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타채144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7. 1. 2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날 D에, 2007. 2. 5. C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8. 1. 22. C를 상대로 대여금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차29)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3. "C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8.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이후 2차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C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중 93,843,69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타채2059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8.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24. D에, 2018. 7. 19. C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의 전부금 지급

D은 2007. 2. 15.부터 1차 및 2차 전부명령에 의하여 매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전부금을 이체해왔는데 그중 2013. 3. 15.부터 2023. 12. 21.까지 이체한 금액은 149,658,874원에 달한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54,434,303원의 양수금 및 그중 11,996,274원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59086), 2023. 10. 2.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15,506,749원 양수금 및 그중 3,657,820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60681)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1. 인용결정을 받아 2016.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2024. 10. 10.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113,227,732원(= 91,672,052원(위 판결 원금 54,434,303원 + 그중 원금 11,996,274원에 대한 2012. 5. 15.부터 2024. 10. 10.까지의 지연손해금 37,237,749원1)) + 21,555,680원(위 지급명령 원금 15,506,749원 + 그중 원금 3,657,820원에 대한 2016. 7. 7.부터 2024. 10. 10.까지의 지연손해금 6,048,931원2))에 이른다.

라. C의 무자력

C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4. 10. 10. 기준으로 113,227,732원의 채무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적극재산으로는 D로부터 매월 받는 급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 6, 7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익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1, 2차 전부명령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 잡은 것이지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확정된 지급명령은 모두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원용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부당이득의 성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증거들과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금융정보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차 지급명령의 채권발생 원인에 관하여 피고의 배우자 E이 C에 대하여 보유하는 구상금 등 9,000만원의 채권을 E과 이혼 당시(2003. 3. 5.) 재산분할 명목으로 C의 승낙 하에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2023. 9. 26.자 준비서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증거가 없고, 2차 지급명령 신청원인에는 오히려 '피고가 C에게 2012. 5. 8. 9,000만원을 대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채권 발생원인 및 발생일자가 불일치하는 점, ② 피고가 위 일시경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피고는 1차 지급명령의 채권발생 원인에 관하여, 피고가 1995년경 E 몰래 300만 원을 직접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주로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2001. 11. 20.경에는 거래하던 F조합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추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차용증,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등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지급명령 청구원인에는 '피고가 C에게 2000. 2. 26.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여 횟수 및 발생일자가 불일치하는 점, ④ 피고는, C가 2006년경 D에 취직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우선 급여에서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가 위와 같이 1차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 지급명령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E의 채권 양수를 승낙한 C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10년을 의도적으로 넘기려는 사실을 알고 피고가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 겨우 2012. 5. 8. 9,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차용금 1억 원에 관하여는 2006년경 채권의 회수 방법까지 자발적으로 알려주었던 C가 위 양수금(차용금) 9,000만 원에 관하여는 시효를 도과시키려고 2003. 3.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차용증서 등도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⑤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가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취직한 사실을 밝히고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C가 급여를 받아 피고에게 임의 변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전부명령에 의한 금원이체 방법을 택한 것은 제3채권자의 C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1, 2차 전부명령에 의하여 D으로부터 C의 급여가 이체된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을 보면, C의 통영시청에 대한 공과금 납부(2020. 10. 26. 17,610원), C에 대한 여러 보험회사의 입금(G의 2022. 4. 20.자 266,754원, 2023. 9. 11.자 194,710원, 2023. 9. 12.자 20,000원, H의 2022. 4. 21. 및 2023. 9. 7. 각 100,000원), C가 근무하는 다수의 D 기사들의 조의금으로 보이는 금원 입금, C의 형으로 보이는 I의 금원 입금 등이 발견되는 점, ⑦ 위와 같은 입금의 경위에 관한 피고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C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허위 채권에 기초한 집행권원(지급명령)을 만든 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외관(전부명령)을 갖추어 피고 명의로 D으로부터 2013. 3. 15.부터 2023. 12. 21.까지 149,658,874원의 전부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직접 청구 원고가 C에 대하여 2024. 10. 10. 기준으로 113,227,732원의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원고는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으로부터 2013. 3. 15.부터 2023. 12. 21.까지 전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149,658,87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3,746,024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피대위채권) 범위 내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13,2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수

1) $11,996,274\text{원} \times 25\% \times 4532\text{일}(2012.5.15.\text{부터 } 2024. 10. 10.\text{까지})/365\text{일}$

2) $3,657,820\text{원} \times 20\% \times 3018\text{일}(2016. 7. 7.\text{부터 } 2024. 10. 10.\text{까지})/365\text{일}$